

보험업권 기본자본 인정 자본증권, 발행조건과 신용도 판단 기준 검토

2025.08.18

금융2실 채영서 선임애널리스트 02-787-2226 youngseo.chae@kisrating.com
 금융2실 정혁진 실장 02-787-2218 hyuck-jin.chung@kisrating.com

Executive Summary

■ 기본자본 규제도입과 기본자본 인정 자본증권 발행 추진

K-ICS 도입 이후 금리하락 등으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하락 압력이 지속되었고,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권을 중심으로 자본증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자본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마련하여 적기시정조치요건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이전까지 보험사가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과 기본자본 인정 자본증권의 발행 조건 차이와 당사의 평가기준을 설명하고자 한다.

■ 기본자본 인정 자본증권의 발행조건

K-ICS에서 자본증권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가용성(손실흡수에 즉시 사용), 2) 지속성(만기가 없고, Step-up 조항 등 중도 상환 촉진 유인이 없을 것), 3) 후순위성(일반 채권 및 보완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대비 후순위), 4) 기타제한의 부재(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완전한 이자지급 재량권 보유, 부실금융회사 지정 또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배당 지급 취소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은 은행의 CoCo 본드와 같이 예정사유 발생 시 보통주 전환이나 상각 조건을 포함한 조건부 자본증권 형태로 발행될 수 있으며, 상기 가용성, 지속성, 후순위성, 기타제한의 부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각·전환 트리거가 없는 자본증권(이하, “비조건부 자본증권”) 형태로도 발행할 수 있다.

K-ICS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은 조건부 조항 외에도 RBC 제도하의 신종자본증권과 몇가지 주요한 차이가 있다. RBC에서는 신종자본증권에 Step-up 조항이 허용되어 금리 상황 조정이 가능했고, 특정 상황에서는 이자지급을 강제할 수 있어 이자지급의 재량권이 제한되었다. 반면, K-ICS에서는 Step-up 조항이 금지되고, 보완자본 대비 후순위성을 가지며, 발행기관이 재량적으로 이자지급을 중단할 수 있어 이자지급의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조건 비교

구분		RBC 신종자본증권	K-ICS 비조건부 자본증권
상환	만기	30년(발행사 선택에 따라 연장 가능)	30년(발행사 선택에 따라 연장 가능)
	Call Option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 가능 (단, 감독원장 승인 필요한 경우 해당 요건 충족 필요, 투자자의 Put Option 조항은 없음)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 가능 (단, 감독원장 승인 필요한 경우 해당 요건 충족 필요, 투자자의 Put Option 조항은 없음)
이자지급	Step-up	있음	없음
	Coupon Skip	선택적 및 필수적 정지	선택적 및 필수적 정지
	누적여부	비누적적 이자지급	비누적적 이자지급
	한도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채권순위	후순위 특약	보통주 및 우선주 대비 선순위이나 기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보험계약자의 채권 등 일반채권과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보통주 및 우선주 대비 선순위이나 기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보험계약자의 채권 등 일반채권과 기한부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다 후순위

자료: DB손해보험, 한국신용평가

■ 발행조건 변화에 따른 Notching 판단 기준

K-ICS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Notching 수준은 RBC 하의 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게 IFSR 신용등급 대비 2 Notch 하향으로 적용된다. 이 신종자본증권은 Step-up 조항이 없어 실질 만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이자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발행기관의 완전한 재량으로 지급되며, 감독규정상 보완자본증권 대비 후순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 대비 자본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각 또는 전환 조건이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보험사는 대체로 이자지급 안정성이 높은 회사로 예상되므로, 기존 신종자본증권과 자본성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단, 이자지급의 안정성이 낮은 경우 자본성이 심화될 수 있어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보험사가 발행하는 기본자본인정 자본증권에는 Notching 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상각 또는 전환 조건이 추가된 조건부 자본증권이 향후 발행될 경우 추가적인 Notching Down이 가능하다. 조건부 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발생시 원리금 전액의 영구적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 조건이 추가되며, 이에 따라 손실흡수성이 비조건부 자본증권 대비 높아지게 된다. 이자지급 정지 요건은 비조건부 자본증권과 유사하지만, 상각·전환 트리거가 부가되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사전에 정한 조건 충족 시점 등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원금에 대해서는 손실 인식 시점이 신용사건(부도, 파산, 지급불능 등) 발생 시점보다 앞당겨진다. 당사는 예정사유 발생에 따라 원리금의 손실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반영하여, 조건부 자본증권의 신용등급 부여시 Notching Down 수준 확대를 고려할 예정이다.

Contents

1. 기본자본 규제도입과 기본자본 인정 자본증권 발행 추진.....	3
2. 기본자본 인정 자본증권의 발행조건	3
3. 발행조건 변화에 따른 Notching 판단 기준	5
4. 향후 주요 모니터링 요인	5
5. Appendix	6

1. 기본자본 규제도입과 기본자본 인정 자본증권 발행 추진

K-ICS 도입 이후 금리하락 등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하락 압력이 지속되었고,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권을 중심으로 자본증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자본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마련하여 적기시정조치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관련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규제수준, 측정방법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규제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이전까지 보험사가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과 기본자본 인정 자본증권의 발행조건 차이와 당사의 평가기준을 설명하고자 한다.

2. 기본자본 인정 자본증권의 발행조건

기본자본 인정요건 :
가용성, 지속성, 후순위성,
기타제한의 부재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지급여력금액 산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증권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가용성(손실흡수에 즉시 사용), 2) 지속성(만기가 없고, Step-up 조항 등 중도 상환 촉진 유인이 없을 것), 3) 후순위성(일반 채권 및 보완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대비 후순위), 4) 기타제한의 부재(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 완전한 배당 지급 재량권 보유, 부실금융회사 지정 또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배당 지급 취소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K-ICS 기본자본 인정요건

구분		내용
요건	가용성	손실흡수에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지 않는 등 손실흡수과정 상 제약이 없어야 한다.
	지속성	만기가 없어야 하고, 해당 자본증권이 중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자본증권의 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이 없어야 한다. 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은 자본증권 미상환시 보험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조항이나 약정으로서, 콜옵션 미행사시 보험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의 보통주 전환 또는 금리상향 등을 포함
	후순위성	지급순서가 보험계약자, 일반 채권자 및 보완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투자자보다 후순위로, 금산법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 결정시 해당 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대출, 지급보증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기타제한의 부재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지급 하되, 보험회사가 배당 지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해야 한다. 금산법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로 지정되거나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배당 지급의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 배당 지급의 취소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에 해당하거나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보험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투자자는 배당 지급의 취소를 사유로 원리금의 반환 또는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 또는 재무상태에 연계되어 부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배당 지급조건과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자료: 법제처

K-ICS 제도하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은 은행의 CoCo 본드와 같이 예정사유 발생 시 보통주 전환이나 상각조건을 포함한 조건부 자본증권 형태로 발행될 수 있으며, 상기 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각·전환 트리거가 없는 자본증권(이하, “비조건부 자본증권”) 형태로도 발행할 수 있다.

기존 RBC 제도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 파산 시 후순위채보다 후순위의 변제순위를 가지며, 경영개선권고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만 존재했으나, 조건부 자본증권에는 여기에 더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사전에 정한 조건 충족 시 원리금이 상각 또는 전환되는 손실흡수 요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RBC제도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자기자본의 최대 25%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였던 반면, K-ICS에서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 한도를 총 요구자본의 15%까지, 비조건부 자본증권의 인정 한도를 총 요구자본의 10%까지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자본증권 가용자본 분류방식

구분		분류방식 및 인정한도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기본자본(요구자본 15% 한도)
	후순위채권	보완자본(요구자본 50% 한도)
비조건부	신종자본증권	기본자본(요구자본 10% 한도)
	후순위채권	보완자본(요구자본 50% 한도)

자료: 금융감독원

K-ICS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은 조건부 조항과 기본자본 인정 한도 외에도 RBC 제도하 신종자본증권과 몇가지 주요한 차이가 있다. RBC에서는 신종자본증권에 Step-up 조항이 허용되어 금리 상향 조정이 가능했고, 특정 상황에서는 이자지급을 강제할 수 있어 이자지급의 재량권이 제한되었다. 반면 K-ICS에서는 Step-up 조항이 금지되고, 보완자본 대비 후순위성을 가지며, 발행기관이 재량적으로 이자지급을 중단할 수 있어 이자지급의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조건 비교

구분		RBC 신종자본증권	K-ICS 비조건부 자본증권
상환	만기	30년(발행사 선택에 따라 연장 가능)	30년(발행사 선택에 따라 연장 가능)
	Call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 가능 (단, 감독원장 승인 필요한 경우 해당 요건 충족 필요, 투자자의 Put Option 조항은 없음)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 가능 (단, 감독원장 승인 필요한 경우 해당 요건 충족 필요, 투자자의 Put Option 조항은 없음)
	Option		
이자지급	Step-up	있음	없음
	Coupon Skip	선택적 및 필수적 정지	선택적 및 필수적 정지
	누적성	비누적적 이자지급	비누적적 이자지급
	재량권	제한적 재량권	완전한 재량권
	한도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채권순위		보통주 및 우선주 대비 선순위이나 기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보험계약자의 채권 등 일반채권과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보통주 및 우선주 대비 선순위이나 기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보험계약자의 채권 등 일반채권과 기한부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보다 후순위

자료: DB손해보험, 한국신용평가

3. 발행조건 변화에 따른 Notching 판단 기준

현재 당사는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신용등급 평가시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신용등급을 선순위 대표 신용도로 적용하며, 기존 RBC 상 자본증권의 경우 선순위 대표 신용도 기준으로 후순위채는 1 Notch, 신종자본증권은 2 Notch를 하향하고 있다.

비조건부 자본증권은
IFSR 대비 -2 notch

K-ICS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Notching 수준은 RBC 하의 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게 IFSR 신용등급 대비 2 Notch를 하향으로 적용된다. 이 자본증권은 Step-up 조항이 없어 실질 만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이자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발행기관의 완전한 재량으로 지급되며, 감독규정상 보완자본증권 대비 후순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 대비 자본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각 또는 전환 조건이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보험사는 대체로 이자지급의 안정성이 높은 회사로 예상되므로, 기존 신종자본증권과 자본성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단, 이자지급의 안정성이 낮은 경우 자본성이 심화될 수 있어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보험사가 발행하는 기본자본 인정 자본증권에는 Notching 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추후 상각/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시
추가 노칭 Down 가능

한편, 상각 또는 전환 조건이 추가된 조건부 자본증권이 향후 발행될 경우 추가적인 Notching Down이 가능하다. 조건부 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발생시 원리금 전액의 영구적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 조건이 추가되며, 이에 따라 손실흡수성이 비조건부 자본증권 대비 높아지게 된다. 이자지급 정지 요건은 비조건부 자본증권과 유사하지만, 상각·전환 트리거가 부가되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사전에 정한 조건 충족 시점 등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원금에 대해서는 손실 인식 시점이 신용사건(부도, 파산, 지급불능 등) 발생 시점보다 앞당겨진다. 당사는 예정사유 발생에 따라 원리금의 손실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반영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부여시 Notching Down 수준 확대를 고려할 예정이다.

4. 향후 주요 모니터링 요인

향후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의 규제지표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규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025년 3월 말 기준 업계 평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생명보험 118.2%, 손해보험 83.9%로 안정적이나,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매우 열위하여 규제 도입 전까지 적극적인 자본확충이나 위험액 경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후 발행되는 기본자본 인정 자본증권 발행조건과 자본증권의 이자지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당 관련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자본증권 발행조건은 회사별 차이가 크지 않으나, 발행조건 상 자본성을 강화하는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 Notching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다.

5. Appendix

조건부 자본증권 관련 법규

구분	내용
보험업법 제114조의2 (사채의 발행 등) (2023.7.1 시행)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3.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4. 「상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②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조건, 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58조의2 (자금의 차입 등) (2023.7.1 시행)	① 법 제114조의2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 또는 자금 차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4. 후순위차입 4의2. 신종자본증권(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의 발행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금 차입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 및 제4호의2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③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나 그 발행보험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공표될 수 있을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1조의3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2023.7.1 시행)	① 영 제5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2. 그 밖에 발행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자료: 법제처, 한국신용평가

유의사항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 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배포,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